

마포로5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(안)

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86-1번지 일대 마포로5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‘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’ 및 ‘토지등소유자수 과반수 동의’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이 있어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마포로5구역 제10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고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15년 12월 16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1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사항

가. 추진위원회 명칭 : 마포로5-10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동 186-1번지 일대

다. 정비구역의 면적 : 8,646.3m²

라. 추진위원회 승인일 : 2009. 10. 29.

2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취소일 : 2015. 12. 16.

3.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취소 사유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‘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’ 및 ‘토지등소유자수 과반수 동의’로 추진위원회 해산 신청

4. 기타 문의사항은 중구청 도심재생과(02-3396-577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